



# 교원윤리규칙

규정번호	3-2-16		
제정일자	2012.09.26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0	총페이지	2

제정 2012년 9월 26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명예와 이익 존중 의무)** ① 교원은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대학의 명예와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와 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대학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교육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3조(규정 준수 의무 등)** ①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 및 본 대학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원은 본 대학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교원은 학교시설 또는 인적·기술적 자원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교원은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교원은 동료 교원, 직원 및 학생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⑥ 교원은 동료 교원, 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성별·종교·국적·장애·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2장 강의 및 학생지도

**제4조(강의 및 학사관리)** 강의는 교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적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타 학사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지도)** 교원은 학생의 역량을 최대한 육성하여 인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미래 지향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3장 연 구

제6조(연구활동) 교원의 연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장 기 타

제7조(심의) 교원의 윤리에 관한 시정 요구·건의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8조(교외활동) 교원의 교외 활동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개인적 발언이나 행동이 대학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성희롱 금지) 교원은 동료 교원, 직원 또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이나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일체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락을 받아 개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